

인천도시관리계획(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)

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4. 2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- 결정(변경)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-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 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 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 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일반용지(C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	변 경				
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 (획지분할가능선)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 (획지분할가능선)
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35	3,297.3	1	536.9		35	3,297.3	1-1	282.0	
							1-2	254.9	
		2	234.8				2	234.8	
		3	239.0				3	239.0	
		4	192.5				4	192.5	
		5	439.0				5	439.0	
		6	609.2	2			6	609.2	2
		7	310.4				7	310.4	
		8	337.2				8	337.2	
		9	398.3				9	398.3	



○ 일반용지(C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35	1 → 1-1, 1-2	획지분할	효율적인 토지이용

라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

